

의안번호	2216834
의 퇴 인	김교홍의원
회 답 일	2026. 4. 28.
추계번호	26C0904

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 4,500만원(연평균 2,9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
 -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(안 제6조)	145	-	-	-	-	145	2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(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8조(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위원회의 설치)	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하여 기본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, 개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둠	의무규정
3	안 제17조(재정지원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1. 공연장 및 필수부대시설(안전·소방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)의 설치비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2. 공공성을 위한 문화·공익시설 설치비 3. 교통·환경·안전 관련 기반시설 설치비	
4	안 제18조(세제 감면)	국가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의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그 밖에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·법인세·소득세·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할 수 있음(제1항)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의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·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5	안 제19조(부담금 등의 감면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등을 해당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	재량규정
6	안 제20조(운영기관의 설립·지정)	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을 설립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 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 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(이하 “운영기관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(제2항) 1. 공연장 및 부대시설 관리·운영 2. 공연·행사 유치 및 마케팅 3.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4. 환경·지역 등과의 상생 프로그램의 기획 및 실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조(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)	○	
2	안 제8조(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위원회의 설치)	×	-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추계에 필요한 (민간)위원 수 등을 확인할 수 없음
3	안 제17조(재정지원)	×	- 사업의 내용 및 범위 추정 불가
4	안 제18조(세제 감면)	×	- 현시점에서 합리적 추계 어려움
5	안 제19조(부담금 등의 감면)	×	- 현시점에서 합리적 추계 어려움
6	안 제20조(운영기관의 설립·지정)	×	- 현시점에서 합리적 추계 어려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안 제17조(재정지원)에 따라 확대되는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고, 안 제18조(세제 감면) 및 안 제19조(부담금 등의 감면)에 따른 수입 감소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추정 가능한 사항으로 비용추계 대상에서는 제외함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(안 제6조)

- 제정안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정책연구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함
 -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“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” 수립을 위해 1억 4,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, 이를 참고하여 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도 동일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
- 제정안에서는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, 첫 기본계획은 제정안 시행 첫 해인 2027년에 수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함

[표 3]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(안 제6조)	145	-	-	-	-	9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위원회의 설치(안 제8조)

- 제정안에 따라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위원회를 두는 경우 위원수당, 회의준비를 위한 경비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다만, 제정안에서 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시점에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다. 운영기관의 설립·지정(안 제20조)

- 제정안에 따라 한국형 복합문화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운영기관을 설립하거나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운영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, 향후 운영기관이 설립 또는 지정된 이후 운영비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현시점에서 제정안 시행 이후 어떤 기관이 운영기관으로 설립 또는 지정될 지 여부와 운영비 지원비율 및 규모 등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운영기관의 설립·지정과 관련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(과장 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